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국가세무총국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의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에 대한**  **공고**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15호  《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》(이하 《기업소득세법》) 및 시행조례(이하 《시행조례》)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, 기업소득세 과세표준의 몇 가지 세무처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  **1. 계절근로자와 임시근로자 등 비용의 손**  **금산입 문제**  기업이 계절근로자, 임시근로자, 실습생, 이직/퇴직자 재임용 및 외부 노무파견직의 고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발생한 비용은, 급여지출과 직원복리비지출로 구분하고, 《기업소득세법》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해야 한다. 이 중 급여지출에 속할 경우, 기업의 급여총액 기수(基数)에 산입하고, 기타 각 항목 관련 비용공제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하도록 한다.  **2. 기업 융자비용지출의 손금산입 문**  **제**  기업이 채권발행, 대출금 취득, 피보험자예금 유치 등 방식의 융자를 통해 발생한 합리적 비용지출은, 자본화 조건에 부합될 경우, 관련 자산원가에 산입해야 하며, 자본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, 재무비용으로서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을 허가해야 한다.  **3. 대리서비스기업 영업원가의 손금산입 문**  **제**  대리서비스를 취급하거나 주업무수입(매출액)이 수수료와 커미션인 기업(증권, 선물, 보험대리 등 기업)이 관련 수입의 취득을 위해 실질적으로 발생한 영업원가(수수료 및 커미션지출 포함)는, 기업소득세 계산 시 실제 금액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.  **4. 전신기업(电信企业) 수수료 및 커미션지**  **출의 손금산입 문제**  전신기업이 고객유치 및 업무확장 등 과정(통신망 접속 전화카드, 전화선불카드 등 위탁판매)에서 중개인이나 대행업체에 수수료 및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, 실질적으로 발생한 상관 수수료 및 커미션지출 중 기업의 당해연도 수입총액의 5% 이하의 부분은 기업소득세 계산 시 실제 금액대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.  **5. 개업 준비기간의 업무접대비 등 비용의**  **손금산입 문제**  기업의 개업준비기간에 발생한 개업활동과 관련한 업무접대비지출은 실제 발생액 중 60%를 기업의 개업비에 산입하고,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,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선전비는 실제 발생액 그대로 기업의 개업비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.  **6. 이전년도에 발생한 공제받지 못한 지출**  **의 세무처리 문제**  《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》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, 기업은 이전년도에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세수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해야 하지만 미공제 또는 과소공제한 지출을 발견한 경우, 기업이 특정항목신고 및 설명을 제출한 후 해당 항목 발생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를 허가한다. 단, 소급인식 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 기업이 상술한 원인으로 초과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은, 소급인식년도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, 완전히 공제하지 못한 경우, 이후연도에 이연공제하거나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.  결손기업이 이전년도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하지 못한 지출을 소급인식하거나, 이익발생기업이 소급인식 후 결손(적자)가 발생한 경우, 우선 해당지출 소속연도 결손액을 조정한 후, 결손금 보전(공제) 원칙에 따라 이후연도에 초과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을 계산하고, 전 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  **7. 기업의 비과세수입 관리문제**  기업이 취득한 비과세수입은 《전문용도의 재정성자금 기업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한 통지》(재세[2011]70호, 이하 《통지》)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 《통지》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지 않은 경우, 기업의 과세대상 수입으로서 소득세과세표준에 산입하고, 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.  **8. 손금산입 규정과 기업의 실제 회계처리**  **간의 조화문제**  《기업소득세법》제21조 규정에 따르면, 기업이 재무회계제도 규정에 근거하여, 실질적으로 재무회계처리에서 이미 인식한 지출은, 무릇 《기업소득세법》과 관련 세수법규에서 규정한 손금산입범위와 표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, 기업의 실제 회계처리에서 인식한 지출에 따라,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손금산입하고,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.  **9. 본 공고 시행시기**  본 공고 규정은 2011년도 및 이후 각 연도 기업의 소득세과세표준 처리에 적용된다. 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.  국가세무총국  2012년 4월 24일 |  | **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**  **应纳税所得额若干税务**  **处理问题的公告**  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15号  根据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》（以下简称《企业所得税法》）及其实施条例（以下简称《实施条例》）以及相关规定，现就企业所得税应纳税所得额若干税务处理问题公告如下：  **一、关于季节工、临时工等费用税前扣除问题**  企业因雇用季节工、临时工、实习生、返聘离退休人员以及接受外部劳务派遣用工所实际发生的费用，应区分为工资薪金支出和职工福利费支出，并按《企业所得税法》规定在企业所得税前扣除。其中属于工资薪金支出的，准予计入企业工资薪金总额的基数，作为计算其他各项相关费用扣除的依据。  **二、关于企业融资费用支出税前扣除问题**  企业通过发行债券、取得贷款、吸收保户储金等方式融资而发生的合理的费用支出，符合资本化条件的，应计入相关资产成本；不符合资本化条件的，应作为财务费用，准予在企业所得税前据实扣除。  **三、关于从事代理服务企业营业成本税前扣除问题**  从事代理服务、主营业务收入为手续费、佣金的企业（如证券、期货、保险代理等企业），其为取得该类收入而实际发生的营业成本（包括手续费及佣金支出），准予在企业所得税前据实扣除。  **四、关于电信企业手续费及佣金支出税前扣除问题**  电信企业在发展客户、拓展业务等过程中（如委托销售电话入网卡、电话充值卡等），需向经纪人、代办商支付手续费及佣金的，其实际发生的相关手续费及佣金支出，不超过企业当年收入总额5%的部分，准予在企业所得税前据实扣除。  **五、关于筹办期业务招待费等费用税前扣除问题**  企业在筹建期间，发生的与筹办活动有关的业务招待费支出，可按实际发生额的60%计入企业筹办费，并按有关规定在税前扣除；发生的广告费和业务宣传费，可按实际发生额计入企业筹办费，并按有关规定在税前扣除。  **六、关于以前年度发生应扣未扣支出的税务处理问题**  　　根据《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》的有关规定，对企业发现以前年度实际发生的、按照税收规定应在企业所得税前扣除而未扣除或者少扣除的支出，企业做出专项申报及说明后，准予追补至该项目发生年度计算扣除，但追补确认期限不得超过5年。  　　企业由于上述原因多缴的企业所得税税款，可以在追补确认年度企业所得税应纳税款中抵扣，不足抵扣的，可以向以后年度递延抵扣或申请退税。  亏损企业追补确认以前年度未在企业所得税前扣除的支出，或盈利企业经过追补确认后出现亏损的，应首先调整该项支出所属年度的亏损额，然后再按照弥补亏损的原则计算以后年度多缴的企业所得税款，并按前款规定处理。  **七、关于企业不征税收入管理问题**  企业取得的不征税收入，应按照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专项用途财政性资金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》（财税〔2011〕70号，以下简称《通知》）的规定进行处理。凡未按照《通知》规定进行管理的，应作为企业应税收入计入应纳税所得额，依法缴纳企业所得税。  **八、关于税前扣除规定与企业实际会计处理之间的协调问题**  根据《企业所得税法》第二十一条规定，对企业依据财务会计制度规定，并实际在财务会计处理上已确认的支出，凡没有超过《企业所得税法》和有关税收法规规定的税前扣除范围和标准的，可按企业实际会计处理确认的支出，在企业所得税前扣除，计算其应纳税所得额。  **九、本公告施行时间**  　　本公告规定适用于2011年度及以后各年度企业应纳税所得额的处理。  　　特此公告。  　　国家税务总局 　　二○一二年四月二十四日 |